

일본, 특허 침해제품 수입 중단한다

일본 정부는 수입품이 자국기업과 개인의 특허권과 의장권을 침해했을 경우 수입 중단을 세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지난달 12일 보도했다. 세관은 수입 중단 요구를 받으면 특허청과 공동으로 30일내 수입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특허권 침해제품으로 판단될 경우 즉각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오는 16일 열리는 정부 지적재산 전략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새 제도안을 확정한 후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일본은 현재 관세정를법에 따라 특허권의 장권 상표권 등을 침해한 외국산의 수입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짜 브랜드의 경우 외형적으로 판단이 간단해 수입금지가 손쉬웠으나, 특허권 및 의장권 침해제품은 판정이 어려워 수입을 금지 시킨 경우가 거의 없다.

또 피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판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 신문은 중국 등 해외에서 일본 기업의 특허와 공업디자인을 도용해 생산된 모방품들이 최근들어 급속히 유입돼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려 새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저작권 보호 나섰다

‘복제의 축’ 중국에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중국 법원이 불법 쌍기 제조업체인 레고가 제기한 중국 장난감업체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레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중국 인민최고법원은 지난달 20일 레고가 중국의 코코 토이를 상대로 제기한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레고 제품과 비슷한 장난감이 있다는 이유로 레고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중국 법원이 저작권 보호에 대해 확실한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레고의 지적재산권 소송 담당 변호사인 헨리 G. 자콥슨은 “이번 판결로 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에서 유통되거나 생산중인 모방제품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이 획기적인 것이며 중국 정부가 최근 들어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금석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차드 우라이프는 “복제물이나 해적판이 판을 치는 중국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결국 복제문화가 개선되도록 정부차원에서 선도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레고는 텐진 소재 코코 토이에 대해 성, 해적선 등 레고 제품처럼 보이는 장난감을 찾아 법적 제재를 시작했다. 코코는 모방한 제품 생산을 중지해야 하고 모방 제품 생산 장비들도 반환해야 한다.

또 베이징 일간지에 사과광고를 게재해야 하며, 적당한 보상금도 레고에 지불해야 한다. 한편 레고는 1958년 특허권을 받으면서 지적재산권 사수에 나서 전세계의 법원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

린도스닷컴 ‘윈도는 일반명사, 독점권리 없다’

미국 샌디에이고 소재 리눅스 개발업체 린도스닷컴(Lindows.com/이하 린도)이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업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상표권을 위협하고 있어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윈도의 영어철자 중 제일 앞머리의 W를 L자로 대체한 이름을 내걸고 등장한 린도는 같은 해 12월 MS로부터 상표권 침해소송을 제기 당했다.

당초 직원 50명의 조그만 회사 린도가 전세계 PC용 운영체계(OS)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룡기업 MS에게 이길 수 있으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싸움은 끝장을 열어야 하는 법. 현재까지 진행된 법정 공방에서 린도는 절대 열세의 예상을 깨고 오히려 MS를 코너에 몰아붙이고 있다. 현재로선 최종판결에 따라 MS의 윈도 상표권이 무효화되고 린도와 함께 IBM 윈도와 HP 윈도, AOL 윈도 등의 상품명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S는 처음 위성던 연방지방법원에 “린도가 의도적으로 윈도와 비슷한 회사명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시키고 있다”며 상표권 사용금지 및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지난 20년 동안 윈도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의 하나로 키우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했다”면서 “린도가 윈도의 브랜드에 무임승차하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린도는 “아무리 힘세고 돈 많은 기업이라도 영어에서 사

용하고 있는 일반명사를 상표명으로 독점할 권리는 없다”는 논리를 맞섰다. 또 MS 윈도의 등장 이전 이미 PC 화면의 사각형 창에 데이터를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라는 의미로 윈도 명칭을 사용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실제로 80년대 신문에는 소프트웨어 업체간의 경쟁을 ‘윈도의 전쟁’으로 묘사하거나 ‘무슨 업체가 윈도를 한다’는식의 헤드라인이 자주 등장했다.

담당 재판부의 존 코프레너 판사는 이런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 지난해 3월과 5월 린도 사이트 폐쇄와 제품 홍보 중지를 요구하는 MS의 예비명령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이에 용기를 얻은 린도는 지난해 10월 MS의 윈도 상표권을 무효화해 달라는 소송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전문가들은 MS가 1995년에야 윈도 상표명을 허가받은 것도 린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특허상표권사무소는 실제로 “윈도가 일반명사이며 MS가 사실상 제2의 의미를 창출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출시 이후 10년 이상 윈도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4월 7일 이번 소송의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로선 MS가 윈도 상표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반독점소송 못지 않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다.

린도의 설립자인 마이클 로버트슨은 음악파일 공유업체 ‘mp3.com’의 설립자로 이미 유니버설과 워너&EMI 등 거대 음반업체와 특허 소송을 경험해 본 인물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거대한 기업을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를 알게 됐으며 현재 이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일본 금융청 지재권 담보 채권 발행 허용

일본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영화 필름 등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 금융감독원에 해당하는 일본 금융청은 지금까지 부동산과 현금, 유가증권 등 6가지 자산을 담보로 한 채권발행만 인정하던 것을 오는 3월 시작하는 2003 회계연도부터 특허 및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나흘개이자이 신문이 보도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그동안 보수적인 금융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로 유명했던 일본이 기술개발의 결과물인 특허와 영화 필름 등 지적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법률로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청은 이를 위해 오는 가을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본 벤처기업들은 보유하고 있는 각종 특허와 영화 필름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해 제품개발 및 영화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일본, 지적재산 재판소 설립 추진

일본에서 우리 나라의 특허법원에 해당하는 ‘지적재산재판소’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일본의 민간단체인 ‘지적재산전략포럼(대표 荒井壽光, 전 특허청장판)’을 통해 발표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의하면 개혁안에 ‘지적재산재판소’ 설립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적재산권 분쟁절차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하여 ‘지적재산재판소’의 창설과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판사를 등용하여 전문성을 갖추고 지적재산권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적재산권 관련 재판의 신속화를 위하여 ‘지적재산권 재판 신속화 법’의 제정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허청과 재판소가 결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소송과 그 대항 소송인 특허무효심판의 원스톱 서비스(One Stop Service)의 실현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지적재산권에 유능한 변호사나 지적재산권 비즈니스맨 등 인재 양성을 위해 지적재산 로스쿨(Law School) 제도의 조기 설립을 건의하였으며 동 개혁안을 골자로 하여 지적재산권 소송 개혁에 반영시켜 국제경쟁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지적재산입국의 실현을 앞당기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방법 BM특허 등록무효

특허법원, ‘알려진 기술이용’ 특허요건 못 갖춰

S사의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해 등록한 비즈니스모델(BM)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S사는 지난 96년 10월 8개항의 청구항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에서의 원격교육방법 및 그 장치’에 대한 BM특허를 출원하여 99년 1월에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맞서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2000년 3월 특허심판원에 이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특허청에서 S사에게 부여한 특허는 특허출원 이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인 만큼 특허등록은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동 판결문은 ‘S사가 원격교육과 관련해 특허출원한 기술을 특허법상 자연원칙을 이용한 발명에 해당되지 만 이 기술은 이미 공지된 것이며 공지된 기술로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특허요건을 엄격히 따져 BM특허 인정범위를 좁게 해석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각종 BM특허 관련 분쟁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광고문의]

(사)한국여성발명협회
(02)2203-9460